

IV 구급차의 이송처치료('26.8.14.시행)

※ 2026년 8월 14일 0시 이전 환자 이송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구급차 관리·운용 안내(제4판)」를 적용함.

▶ 이송처치료의 부과(응급의료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가 구급차를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였을 때 아래의 기준을 준수하여 응급환자로부터 이송처치료를 받을 수 있음
 - ※ 개조 등을 통해 구급차 운용자가 임의로 구급차 구분(일반, 특수) 변경 불가
- 구급차 이용과 관련하여 이송처치료 외의 추가비용* 청구 불가
 - * 부당 추가비용의 예: 의료장비 사용료, 처치비용, 소모품·의약품 비용, 통행료, 카드 수수료, 보호자 탑승료 등
- 이송거리는 환자가 실제로 탑승한 거리에 따라 산정
 - ※ 왕복, 시외 지역 등의 이유로 추가 비용 요구 불가

IV

구급차의 이송처치료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3]〉

구분	요금의 종류	응급의료법 제4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의료기관, 응급환자이송업 등	응급의료법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일반 구급차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40,000원	26,600원
	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1,500원/1km	1,000원/1km
특수 구급차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95,500원	63,600원
	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2,300원/1km	1,500원/1km
공통	할증요금 (평일 18:00~09:00, 토요일, 공휴일)	기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 가산	
	대기요금 (병원 도착 후 30분 경과)	6,000원/10분	

- 비고: (1) “이송거리”는 환자가 구급차에 실제로 탑승한 거리임.
 (2)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를 따름.
 (3) “대기요금”은 의료기관에 도착하여 환자를 인계하기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에 대하여 부과되는 요금으로 출동 및 처치기록지의 “기관도착 연월일”부터 “이송종료 연월일”까지의 시간을 토대로 산정하며, 병원 도착 후 30분경과 후부터 10분 단위로 책정함.
 (4) 선박에 응급환자가 탑승한 구급차가 승선하여 이송하는 경우 해당 구간은 이송거리가 아닌 이송시간에 따라 10분마다 6,000원을 부과함. 다만, 도선료, 숙박비 등은 실제 발생한 비용의 범위에서 별도 부과 가능함.
 (5) 응급환자가 선박 및 항공기에 탑승한 경우의 이송처치료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함.

- 대기요금 산정: 병원에 도착하여 30분을 초과한 때부터 대기요금을 부과하며, 초과시간 10분 미만을 절사하지 않고 10분 단위로 올림.

〈 대기요금 산정 방식(예시)〉	
대기시간	대기비용
~30분	-
30분 1초~40분	6,000원
40분 1초~50분	12,000원
50분 1초~60분	18,000원
60분 초과 시 매 10분당	6,000원씩 추가

- 선박을 통한 구급차 이송 구간 요금 산정: 해당 구간은 이송시간이 10분에 도달하는 때마다 6,000원의 요금이 추가되며, 10분 미만의 시간은 절사

〈 선박 요금 산정 방식(예시)〉	
선박 이동 시간	비용
~9분 59초	-
10분~19분 59초	6,000원
20분~29분 59초	12,000원
30분~39분 59초	18,000원
40분 초과 시 매 10분당	6,000원씩 추가

- 도선료(선박 운임), 숙박비의 경우 결제 영수증, 거래명세서, 승선권 등 세부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시하여 실제 발생한 비용의 범위 내에서 청구하여야 하며, 증거서류 원본은 별도 보관하여야 함.(선박 운임 및 숙박비 외 비용 청구 불가)
 - 숙박비는 숙박목적에 사용된 경비에 한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호텔 등의 부대 서비스(룸서비스, 객실 내 전화 사용 등) 이용 비용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함.
 - 도선료와 숙박비의 과도한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상한액 내에서 청구 가능

〈 도선료, 숙박비 상한액〉	
선박운임	숙박비
특등실, 1등실 등 제외한 일반석 기준	실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Q & A

01 할증요금 시간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 할증요금은 할증 적용시간(평일 18:00~09:00, 토요일, 공휴일)에 환자 이송이 시작된 경우 기본 및 추가 요금에 각각 20% 가산됩니다. 다만, 구급차 할증 적용시간 이전에 이송이 시작되어 할증 적용 시간에 진입한 경우에는 기본요금에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으며, 할증 적용 시간 이후 발생한 추가요금에 대해서만 20%를 가산합니다.

02 공휴일 야간에 환자를 이송할 경우, 야간할증 및 휴일할증의 중복적용이 가능한가요?

- ▶ 휴일과 야간 할증 요금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03 구급차로 선박을 이용하여 이송 시 선박 요금에 승선 대기시간이나 하선 준비시간도 포함되나요?

- ▶ 구급차 이송 시 선박을 이용한 경우에는 이송시간을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하며, 항구 도착 후 발생하는 대기시간도 이송시간에 포함됩니다. 또한 승선을 위한 대기 시간 및 하선을 위한 준비시간도 이송시간에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 ▶ 최초 출동하여 현장(또는 병원)에서 환자를 구급차에 탑승시켜 선박 이송을 위해 이송하는 때와 선박 이동 후 하선 시점부터는 이송거리에 따라 부과됩니다.

▶ 이송처치료의 수취

- 구급차 내부에는 구급차 요금미터장치 및 신용카드 결제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구급차요금미터를 사용하여 운행

〈구급차 요금미터장치 의무장착 대상〉(45p 참고)

- 가. 응급의료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급차(의료기관)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보건사업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나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개설된 부속 의료기관의 구급차의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나. 응급의료법 제4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구급차(이송업자 및 비영리법인)
- 다. 2019년 9월 1일부터 위 호에 따른 구급차 운송자는 자동차 검사 시 요금미터장치 검정을 함께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응급의료법 제50조에 따라 시정·정지명령 대상이 될 수 있음

- 환자 또는 보호자가 신용카드 결제 요구 시 응하여야 함

※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 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 의해 구급차 운송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이송처치료 요금표(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3])를 구급차 내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잘 보이는 곳에 반드시 부착(붙임1 참조)

- 이송처치료를 받을 시 반드시 이송처치료 영수증(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별지 제5호서식])을 발급하고 별도로 보관.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갈음할 수 있음(붙임2 형식)

* 이송처치료 요금 항목 (1. 운행거리, 2. 운행요금(기본, 추가, 할증, 대기요금, 선박이송요금), 3. 구급차 탑승시간, 4. 기관 도착시간) 각각을 환자·보호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가 된 영수증과 함께 출력되는 매출전표(총액만 기재되는 형식의 매출전표 사용 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이송처치료영수증 발급 필요)

※ 의료기관에서 출발하기 전에 미리 인터넷 지도 등을 활용하여 이송처치료를 미리 산정 후 병원비에 합산하여 사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나, 실제 운행 시 미터기를 사용하여 나온 금액과 차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환불하도록 함

- 요양기관(의료기관 등)의 구급차를 이용하여 이송되었을 경우의 이송 처치료는 본인부담 100% 급여항목에 해당(「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요양 급여의 본인부담) [별표 6] 1호 사목)

▶ 관련 처벌 조항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송처치료를 과다하게 받거나, 이송처치료 외의 별도 비용을 받은 경우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차 운용자에게 각각 면허·자격 등의 정지, 업무정지 처분 가능
(응급의료법 제55조제1항제2호 및 제3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 18] 2호 마목)

구 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응급의료종사자	면허 또는 자격정지 1개월	면허 또는 자격정지 1개월	면허 또는 자격정지 1개월
구급차 운용자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구급차를 운용하는 요양기관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는 알선·유인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의료법」 제88조)



01 한 대의 구급차로 복수의 환자 이송 시 이송처치료 산정 기준은?

- ▶ 구급차의 내부기준 및 의료장비 기준, 감염관리 및 이송 중 응급의료서비스 등을 고려할 때 구급차 한 대당 한 명의 환자를 이송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대규모 재난 사고, 다수인이 포함된 사건·사고 등으로 불가피하게 구급차 한 대에 한 명 이상의 환자 이송이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각각의 환자에게 응급 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송처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02 A병원 소속 구급차가 외래진료를 위해 B병원으로 이송 후 대기하였다가 다시 A병원으로 돌아올 경우 이송처치료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 환자 이송 시 이송처치료는 응급의료법 제24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응급환자 등 이송시 A병원에서 B병원으로 외래진료를 위해 이동 후 대기하였다가 다시 A병원으로 돌아오는 경우 기본요금은 1번만 청구하고 B병원에 도착하여 대기하는 동안에는 B병원 도착 후 30분이 초과한 때부터 10분 단위로 대기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B병원에서 출발할 때 다시 기본요금을 받으면 부당 추가비용 수취에 해당합니다.
한편, 의료기관 A병원에서 외래진료를 위해 의료기관 B병원으로 갔다가 원래 소속으로 복귀하여 새로운 요청과정을 거쳐 동일한 응급환자가 이전 이송이 종료된 장소에서 다시 탑승하였을 경우 별도 행위로 간주하여 기본 요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03 어떤 환자가 부산의 ○○응급환자이송업체의 구급차를 이용하여 부산(자택) → 서울(외래) → 부산(자택) 으로 이동하였다면 요금은? 이 경우 통행료는?

- ▶ 부산 출발 → 서울병원에서 대기 → 다시 부산으로 귀가하면서 기본요금은 1번만 청구하고 실제로 환자가 탑승하여 움직인 거리에 대해 이송처치료를 받는 것은 합당하나, 서울에서 출발할 때 기본요금을 다시 한번 받으면 허가지역 외 영업 또는 부당 추가비용 수취에 해당합니다. 다만, 서울병원에 도착하여 대기하는 때에는 병원 도착 후 30분이 초과한 시점부터 10분 단위로 대기요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서울병원을 출발한 시점부터는 다시 이송거리에 따라 추가요금이 부과됩니다.

- ▶ 통행료 역시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구급차는 「유료도로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7항에 의해 통행료가 100% 감면되므로 각 시·도를 통해 “긴급면제카드”를 한국도로공사에 신청하면 됩니다.(신고필증, 허가필증 발급 구급차에 한해 신청 가능)

04 병원 구급차 내 요금미터장치와 신용카드 결제기를 설치하였더라도 이송처치료를 반드시 환자에게 받아야 하나요?

- ▶ 구급차 운용자가 구급차를 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송처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요양기관(의료기관)의 구급차를 이용하여 이송되었을 경우의 이송처치료를 청구하면 이는 본인 부담률 100% 급여항목에 해당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별표 6] 1호 사목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요양기관의 구급차를 이용하여 이송되었을 경우의 이송처치료

아울러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면제·할인하거나, 금품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의 영리 목적 소개·유인·알선 행위는 금지하고 있어 이송처치료 미청구 가능 여부는 「의료법」 제27조제3항의 한계 안에서 구체적인 개별 사례별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 ③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대법원 판례 (2004도5724) 「의료법」 위반

- 구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제3항의 ‘소개·알선’이라고 함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고, ‘유인’이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사주하는 행위’라고 함은 타인으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할 것을 결의하도록 유혹하는 행위를 말하고, 위 조항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자의 환자 유인행위 등을 금지함은 물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환자 유인행위나 그 사주행위까지도 금지하는 취지이다.

- 의료기관·의료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그 과정에서 환자 또는 행위자에게 금품이 제공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의료법」 제25조제3항의 환자의 '유인'이라 할 수 없고, 그 행위가 의료인이 아닌 직원을 통하여 이루어졌더라도 환자의 '소개·알선' 또는 그 '사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① 응급환자*의 경우, 발생 자체가 예측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사전승인이 어렵다는 측면이 있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처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의료인의 판단에 의해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긴급히 보내는 경우에는 영리 목적의 소개·알선 행위로 간주하기는 어려움

* 응급의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기준 제시

- 다만, 이 경우에도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응급환자를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이송 등을 하는 것은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며,

응급의료법 제54조의2(유인·알선 등 금지) 제44조제1항에 따른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응급환자를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이송 또는 소개·알선하거나 그 밖에 유인하거나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법 제55조제3항(벌칙)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개설 또는 영업에 관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응급환자임에도 합리적인 이유*없이 고정적·반복적으로 동일한 병원에 보내거나 환자·보호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특정 병원으로 이송하고 이송처치료를 미청구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의료법 저촉 여지 높음

* 지리적, 의학적으로 처치가 가능한 병원이 인근에 1곳밖에 없거나, 해당 의료기관이 적절한 응급 의료를 할 수 없어 상급병원 또는 지역·권역 응급의료기관 등으로 이송하는 경우 등

- ② 거동불편자에게 이송처치료를 무조건적으로 받지 않는 것은 「의료법」 제27조제3항 저촉 가능성이 있으며,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
- ③ 환자가 아닌 일반인이나 용도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환자 등의 교통편의 제공 등을 위한 단순 이송 목적 사용 불가

☞ 참고.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운용하는 구급차의 이송처치료 징수

-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행하는 보건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업무' 등을 수행할 경우는 이송처치료 수취 항목에 미해당.
-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보건기관이 수취하여야 할 이송처치료를 감면하는 경우는 관련 법규(「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의료기관 이송처치료 징수 관련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응급의료과-6943호 (2014.12.22.))